

심사보고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17
----------	-----

2025. 1. 22.(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5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1월 22일

-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의료비후불제 대상범위가 다자녀가구(2자녀이상)포함한 도민 81만명*으로 확대되어 보건의료 취약계층 도민 수혜폭이 넓어지고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협과 체결된 정책자금 추가 확보

- 누적 수혜자('24년말 기준) : 1,250명, 신청금액 : 32억원

※ '23년 477명 / '24년 773명('23년 대비 62%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나. 주요내용

- 사업내용: 금융기관(농협)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 채 권 자: NH농협은행(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 주채무자: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받은 도민
 -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조례 상 지원대상
- 용자금액: 50억원(농협 정책자금)
 - (현행) 25억원
 - (변경) 50억원
- 용자조건: 1인 300만원 한도 / 3년 무이자 분할상환
- 보증기간: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 보증범위: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이하 “본 동의안”이라 함)은 의료비후불제 대상범위가 다자녀가구(2자녀이상)를 포함한 도민 81만명으로 확대되어 보건의료 취약계층 도민 수혜폭이 넓어지고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협과 체결된 정책자금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¹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10)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 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함임.

※ 본 동의안에서 사업대상(주채무자), 용자조건(1인 300만원 한도 / 3년 무이자 분할상환)의 변경은 없음.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사업 신청자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맞춰 농협과 체결된 정책자금을 추가 확보하려는 것임.

- (현행) 25억원 → (변경) 50억원

○ 2023년부터 시행된 의료비 후불제 사업 지원 대상자는 시행 초기 112,358명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810,760명으로 충북 전체인구의 49.3%에 이름.

※ 사업 지원 대상자(수혜가능 인원) : 810,760명 (충북 전체인구 49.3%)
- 65세 이상 330,884, 기초생활수급자 47,061, 차상위계층 25,782, 국가유공자 6,634, 장애인 45,562, 다자녀가구 354,837

○ 또한,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시술(수술) 지원 대상 질환도 시행 초기 6개 질환에서 현재 14개 질환으로 확대되었고,

※ 임플란트, 치아교정, 슬고관절, 척추, 심뇌혈관, 암, 소화기(담낭, 간, 위, 맹장),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 안과

- 참여 병원도 시행 초기 80개소(종합병원 12, 의원 68)에서 268개소(종합병원 13, 병원 19, 의원 236)로 확대됨.

○ 그동안 사업 추진 실적('24. 12.31.기준)을 살펴보면, 신청인원 1,250명(32억원)에 대출인원 982명(25억)으로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이용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4. 12. 31./단위 : 명, 천원)

사업신청		대출실행	
신청인원	신청금액	대출인원	대출금액
1,250	3,215,701	982	2,503,181

-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지원대상자, 대상질환 및 참여 병원이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대상질환 및 참여 병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원 및 대출인원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정책자금의 추가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농협 정책자금을 추가 확보함에 있어 점진적으로 증액하지 않고, 현행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두 배를 증액하려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5년 당초예산에서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재원(농협정책자금)에 대한 미상환금 보전 및 이자보전 비용이 25억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본 동의안에 따라 농협정책자금이 50억원으로 증액될 경우 미상환금 보전 및 이자보전 비용의 재산출을 통한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의료비 후불제 사업(2025년 당초예산)

○ 사업비 : 310,935천원

- 산출근거

[미상환금 보전] 2,500,000천원(농협정책자금) × 5%(예상미상환율) = 125,000천원

[연체이자 등 보전] 3,435천원(연체이자 등) = 3,435천원

[이자보전] 2,500,000천원(농협정책자금) × 5.3%(예상금리/변동) = 132,500천원

[홍보비] 50,000천원 × 홍보물 제작 1식 = 50,000천원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농협과 체결된 정책자금을 추가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용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협정책자금의 추가 확보에 부응해 본 사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되며,
 - 이용자 및 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업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대상 수술(시술) 범위 및 참여병원 확대, 지원한도의 증액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 의료비 후불제 용자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상환금에 대한 환수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것.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

의안 번호	817
----------	-----

제출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의료비후불제 대상범위가 다자녀가구(2자녀이상)포함한 도민 81만명*으로 확대되어 보건의료 취약계층 도민 수혜폭이 넓어지고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협과 체결된 정책자금 추가 확보
 - 누적 수혜자('24년말 기준) : 1,250명, 신청금액 : 32억원
 - ※ '23년 477명 / '24년 773명('23년 대비 62% ↑)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2.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금융기관(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 채권자 : NH농협은행(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
- 주채무자 :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
 -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조례 상 지원대상
- 융자금액 : 50억원(농협정책자금)
 - (현행) 25억원
 - (변경) 50억원
- 융자조건 : 1인 300만원 한도 / 3년 무이자 분할상환
- 보증기간 :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
- 보증범위 :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

3. 참고사항

- 의료비후불제 추진상황 등 주요내용 불임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5. 기타 : 해당없음

□ 필 요 성

- 의료비후불제 사업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고 질병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 수혜가능 인원 : 810,760명 (충북 전체인구 49.3%)

- 65세 이상 330,884, 기초생활수급자 47,061, 차상위계층 25,782, 국가유공자 6,634, 장애인 45,562, 다자녀가구 354,837

- 대상수술 : 14개 수술 및 시술

※ 임플란트, 치아교정, 슬고관절, 척추, 심뇌혈관, 암, 소화기(담낭, 간, 위, 맹장), 호흡기, 골절, 산부인과, 비뇨기, 안과

- 참여병원 : 268개소(종합병원 13, 병원 19, 의원 236)

- 재원규모 : 25억원(농협 정책자금) ※ '25년 예산액(도비) : 310,935천원

- 신청수요가 재원규모 초과 시 관련절차(채무보증 확대, 추경예산 등) 걸쳐 재원규모 확대

- 지원방식 : 무이자 융자(대출 방식)

- 대출기관 : 28개소(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대출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본인거동 불가, 신용불량자 및 은행 연체채권 보유자 경우 대리 대출 가능

- 지원한도 : 1인당 50만원 ~ 300만원 * 자기부담금 한도 내

- 상환조건 : 최대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無)

□ 그간 추진상황

- 의료비후불제 시행 : '23.01.09.
-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격 확대(65세 이상 및 취약계층 연령제한 폐지) : '23.02.01.
- 의료비후불제 신용확인 절차개선 : '23.04.24.
※ 환자가 농협 직접 방문 신용정보확인서 발부 제출 → 환자가 도로 신용정보확인 신청위임도 → 농협 공문 확인
- 의료비후불제 치아교정 등 지원질환 확대(6개→14개질환) : '23.11.13.
- 지원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다자녀가구) : '24.03.06.
- 다자녀가구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승인(보건복지부) : '24.08.05.
- 다자녀가구(2자녀이상) 확대 시행 : '24.09.27.
-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특별상 수상(지방시대위원회) : '24.11.07.
- 모든산모 분만의료비 등 산부인과 질환 확대 : '24.12.01.
- 서울시 의료비후불제 도입 공동 TF 구성 업무협약 : '24.12.23.
- 대상자 발굴 다각적인 홍보 추진(온오프라인 채널) : 지속

□ 추진실적

①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및 안정적 사업 운영

- 사업 신청 현황 : 1,250명(32억원)

(‘24.12.31.기준, 단위 : 명)

대상별 (명)	계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1,250 (100%)	545 (43.6%)	456 (36.5%)	152 (12.2%)	53 (4.2%)	18 (1.4%)	26 (2.1%)

질환별 (명)	계	임플란트	치아교정	척추	슬관절	골절	심혈관
1,250 (100%)		959 (76.7%)	81 (6.5%)	70 (5.6%)	45 (3.6%)	24 (1.9%)	19 (1.5%)
		고관절	뇌혈관	암	소화기	호흡기	안과
		15 (1.2%)	13 (1.0%)	10 (0.8%)	9 (0.7%)	4 (0.3%)	1 (0.1%)

- 융자금 미상환율 : 1.3%(13명) ※ 복지부 응급의료비 대자금 제도 미상환율 89%

대출내역		미상환내역		미상환율
인원(명)	금액(천원)	인원(명)	금액(천원)	
982	2,503,181	13	27,162	1.3%

②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한 민간 의료기관 도정참여 확대

○ 참여의료기관 : ^{시행}80개소 → ^現268개소(188개소 ↑, 335% ↑)

(단위 : 개소)

구 분	협약 의료기관 (‘23.1.9.)	협약 의료기관 (‘23.6.20.)	협약 의료기관 (‘23.9.20.)	협약 의료기관 (‘23.12.29.)	협약 의료기관 (‘24.12.31.)
합 계	80	145	167	179	268
종합병원급	12	12	12	12	13
병 원 급	-	9	13	13	19
개인의원	68	124	142	154	236

□ 향후계획

- 대상자 발굴 및 도민 체감 위한 다각적인 현장 맞춤 홍보 전개
- 성과평가 통한 지원대상, 대상질환 등 수혜범위 지속 확대
- 시·군 및 의료기관 대상 의견수렴 통한 제도 개선 검토
 - 의료취약지 참여의료기관 제한적, 인근 타지역까지 확대 등
- 전국 확산 분위기 조성(서울시와 협력 등) 및 국가제도 반영

참고

의료비후불제 정책자금 현황

□ 정책자금 운영현황

(‘24. 12. 31./단위 : 명, 천원)

사업신청		대출실행	
신청인원	신청금액	대출인원	대출금액
1,250	3,215,701	982	2,503,181

(‘24. 12. 31./단위 : 명, 천원)

정책자금(A)	대출금액			대출가능액 (A-D)	비고
	총 실행액 (B)	상환액 (C)	대출잔액 (D=B-C)		
2,500,000	2,503,181	822,510	1,680,671	819,329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제5조(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1.>

1. 65세 이상인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융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적정성,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채무보증)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융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